월간 「설비건설」에 게재된 내용으로 알아보는 2007년 트렌드

본지는 매년 12월호에 지난 1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 보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지난 1년간 월간 「설비건설」에 게재되었던 주요 내용들을 되짚어 보는 의미는 한 해 동안 설비건설업계의 관심사항과 주요 흐름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지난 날들을 밑거름 삼아 다가오는 새해의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진정한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정신을 갖기 위함이다.

2007년은 건설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반 · 전문 겸업제한 폐지를 포함한 건산법이 개정되는 역사적인 획을 긋는 해였다.

이밖에 상생바람을 타고 올해는 유난히도 하도급 관련 정책들이 쏟아지는 해이기도 했다.

지난 1년간 월간 「설비건설」에 게재되었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자.

□ 법령분야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07년 5월호, 6월호)

건설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 등록을 금지한 일반 · 전문건설업 간 겸업제한은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기계설비공사업은 기술적 특성을 감안하여 2011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허용은 '종합적 계획 · 관리 · 조정이 불필요한 소규모 공사' 에 한해 오는 2009년 7월부터 가능해진다.

• 건산법시행령 · 시행규칙 입법예고(10월호)

건교부는 일반 · 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5일 입법예고하고 9월 27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본격 개정에 들어가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은 4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내년부터 일반 · 전문건설업간 겸업이 허용됨에 따라 본격화될 교차 진출 때 과거 공사실적의 인정 기준이다.

또한 2009년 7월 시행이 예정된 단순복합공사의 원도급 허용범위와 지난 8월 발표된 건설업 등록 때 기능인력 보유 의무조항 등과 함께 내년에 별도의 입법을 통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부실, 부조리에 대한 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0월호)

내역입찰제도 개선, 적격심사항목보완, 적격심사 이행관리계획 미준수 업체 제재사유 추가, 정정공고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주요 개정내용		시행일	기대효과
일반 · 전문 겸업제한 폐지	법 제12조(건설업자의 겸업제한)의 일반 · 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2008.1.1	• 기계설비공사업은 시행시기를 2011년 말까지 유예 • 이 기간동안 우리협회는 설비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및 원도급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 사전 준비 • 회원사도 충격완화를 위한 대비책 마련 등 사전준비기간으로 활용 • 기계설비업만 유예된 것은 기계설비의 기술적 특성을 정부와 입법기관에서공식적으로 인정한 큰 성과임
	단, 기계설비공사업은 4년 유예	2012.1.1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의무화	민간발주공사도 국민연금 · 건강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의무적으로 명시 및 납입 보험료 정산	2008.1.1	• 사회보험료 공사금액 미반영 건설사에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 우리업계 원가부담의 가장 큰 요인인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를 민간공사까지 사후정산제도 도입(공공공사는 2007.1.1부터 시행 중)
단순복합공사 원도급허용	2개 공종 이상의 소규모 단순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원도급 허용	2009.7.1	• 소규모 단순복합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자도 전문면허를 복수로 취득하여 원도급 공사 참여 가능 • 분리발주와 동일한 효과 발생
하도급 계획서 제출 의무화	제출된 하도급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건설업체는 과태료(500만원) 부과	2008.1.1	• 하도급계획 제출 및 적정성 검토 의무화 • 공공공사의 경우 입찰 · 계약 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예정자, 하도급예정금액을 명시토록 하여 하도급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저가하도급 방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화	원도급자의 부도,하도급대금 2회 이상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의 경우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화	2008.1.1	• 부도 · 파산 등 사유발생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로 하도급 대금을 법적으로 확보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시참자에 의한 다단계하도급, 임금체불 방지 위해 시참자제도 폐지	2008.1.1	• 겸업제한제도가 폐지되면 일반건설업자가 우리 회원사를 배제하고 시참자와 직접 하도급계약 체결 우려(시공참여자제도 악용 우려) • 향후 건산법 시행령 ·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시 성과급제도 도입 등 으로 회원사의 인력관리에 불편 없도록 대책 강구
협회 위탁 업무 강화	건설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 및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 확인 조사 등을 협회에 위탁	2008.1.1	• 건설업 등록 신청내용, 공사실적 신고 내용,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의 권한 위임으로 협회 위탁업무 증가 • 부실건설업체 및 페이퍼컴페니 퇴출 촉진으로 내실화 및 시장질서 확립

및 시행규칙이 제·개정되어 지난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1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물량내역서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기관의 물량산정 오류시 설계변경이 불가능해 소규모 공사에서 경제적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협회가 재정경제부에 "1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계약서에 물량내역서가 포함되도록"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2월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이번 회계예규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 등 지난 해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총력을 기울여 건의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개정(10월호)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0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설계서와 물량내역서 등의 범위에 대한 정의규정 보완 △손해보험 관련 손해공제 포함 △설계변경 관련 조문정리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제한 대상 추가 및 입찰금액조정 규정 마련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등이 개정되었고, 공사입찰유의서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 △입찰무효사유 보완 △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조문정리 등이 개선되었다.

• 지방계약법령 개정(5월호)

행자부가 지난 3월 27일 행정자치부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 시행에 들어갔다.

행자부의 이같은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계약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2007년 3월 입찰공고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서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지방계약법령 개정(10월호)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20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은 당초 행자부가 분리발주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제77조를 개정하여 '공사의 분할 및 분리발주 시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등 상급기관에 보고' 토록 입법예고 되었으나 우리협회는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하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근거 조항인 단서3호는 제외' 토록 추진하여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또한 하도급관리계획을 불이행한 원도급업체는 앞으로 부정당업자로 재제받아 입찰참가자격이 최소 1개월에서 최고 6개월 미만까지 제한된다. 이밖에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단품슬라이딩제를 도입해 특정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등락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월호)

학·경력자제도 개선 등 기술자제도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기술등급 승급 범위를 자격자 중 기사와 산업기사는 고급까지 승급 가능하고 학·경력자는 초급으로만 인정한다.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10월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및 과징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8월 22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 8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행위 심사지침 시행(10월호)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 중 수급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감액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8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대상 사업장 대폭 확대(9월호)

내년부터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대상 사업이 '5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으로 확대된다. 또 사업주가 내는 납입금액이 1일 4,000원으로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퇴직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이슈&이슈

• ESCO사업 현황(1월호)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인 ESCO 단위 사업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ESCO 투자실적은 1998년 이후 에너지절약 시설 개체 사업의 급속한 증가에 힘입어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2천억원 대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2005년에는 건당 평균 9.1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스코 사업분야가 조명기기 · 보일러 등 단순 설비 교체에서 열병합발전소 · 냉난방설비, 공정개선 및 폐열회수 등 복합설비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가 큰 화학, 철강, 제지 등 산업체, 대형병원, 산업단지 등이 새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도입하면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효과적인 사업이다.

- 제도의 개요 : 1월호
- 계약형태 및 활동 현황 : 2월호
- 지원시책 : 4월호
- 외국의 ESCO 활동 현황 : 4월호
- ESCO 등록업체 중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 현황 : 4월호

• 집단에너지사업이 밀려온다(6월호)

집단에너지 사업이란 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1개소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의 다수 이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지역냉 · 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으로 구분된다.

산업자원부가 지난 3월 30일 대구, 울산, 광주 · 전남, 김천, 진천 · 음성, 진주, 전주 · 완주 등 8개 혁신도시에 대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혁신도시의 사업권을 둘러싼 관련 기업들의 경쟁이 본격화 됐다.

본지는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현황(8월호)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1989년 협회 창립 이후 설비건설업계의 업역확대를 위해 분리발주를 숙원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그동안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협회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요 발주처 및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를 시

행하고 있다.

최근들어 기계설비공사는 단순한 기계설비에서 벗어나 쓰레기이송설비, 지열냉난방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시공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역에 대한 확고한 규정이 없어서 설비 · 일반 · 전문 건설업자 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러한 신규 분야가 우리 설비건설업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 17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2개 공종 이상의 소규모 단순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원도급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로써 오는 2009년 7월 1일부터는 소규모 단순복합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자도 전문면허를 복수로 취득하여 원도급 공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분리발주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지는 앞으로 분리발주 확대를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분리발주 추진 과정 및 분리발주된 공사현황(10억원 이상, 2002년부터)을 살펴보았다.

• 유비쿼터스, 아파트와 만나다(9월호)

최근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주택업계의 첨단아파트 공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각 건설사는 커뮤니티 시설, 조경, 외관 등 유비쿼터스와 아파트를 접목하는 첨단 아파트라는 프리미엄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

첨단시설 공급에 따른 비용상승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입지여건과 품질의 우수성은 물론 첨단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향이 반영되고 있다.

현재 이런 기술이 접목됐거나 반영될 예정인 첨단아파트에 대해 살펴보았다.

□ 경영분야

•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제도 시행 안내(5월호)

정부가 저소득층 복지 지원확대 등을 위해 근로장려세를 도입함에 따라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토록 의무화 하였고, 2007년 이후 지급분부터는 미제출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에 따라 본지는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제도 및 신고요령 등을 게재했다.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 예정(7월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공사정보망이 구축돼 올해 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하도급 관련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 원 · 하도급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산업정보망 내에 하도급공사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 하도급거래시 피해 예방법(7월호)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중소기업(수급사업자)들이 대기업과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입증자료 불비 등으로 목적물을 완성하고도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해 10가지 단계별 조치사항을 제시했다.

• 설비건설업계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1월호~9월호)

설비건설업을 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서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어떤 것은 시기를 맞추지 못해 벌금을 물 때도 있고, 어떤 것은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증이 많아진다. 이 때 도움을 받기 위해 관련기관 및 협회 등에 일일이 문의하기도 하지만 번거롭기 그지 없다.

설비건설업법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알아두면 업무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방안

기본 방향	세부 내용
통보하는 주체	1차 하도급업체 : 자사의 계약사항을 직접 통보
통보받는 주체	발주자
대상 공사	1억원 이상의 원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 공사
과태료 부과 방침	– 현행 건설공사대장과 마찬가지로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의2) – 단,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가 작성하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허위기재나 미통보를 강요하는 경우,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됨
정보 상호 교차 검증	발주자는 원도급업체가 통보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하도급업체가 통보한 "하도급공사대장"의 내용을 상호 비교 · 검증할 수 있도록 함
원도급–하도급 공사 통합관리	–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하도급대장과 원도급업체의 건설공사대장과 통합하여 관리되도록 설계 – 공사현장 기준 : 전체 참여업체 및 참여자의 실명 관리 – 건설업체 기준 : 해당업체의 원 · 하도급 실적의 종합적 관리

처리에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벌칙을 미리 피하게 돼 경영상 이익을 가져다 준다.

본지는 설비건설업계가 알아야 할 주요 신고사항 및 벌칙규정을 지난해에 이어 1월호부터 9월호까지 게재했다.

• 건설공사 노무제도 및 실무(8월호~12월호)

대한설비건설협회 각 시 · 도회는 최근 개정, 시행되고 있는 건설 노무관련제도와 국민연금 · 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등 사회보험 실무에 대해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무강습회를 실시했다.

이 강습회에서 서울특별시회 자문 노무사이자 노무법인 한길 본사 대표인 신홍식 노무사가 사회보험실무와 최근 개정 시행중인 노무제도 등을 강의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동안 회원사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설명했다.

전자적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시행령 부칙)

기본 방향	세부 내용
통보대상공사	– 2003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로서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해당) *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 적용
통보방법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을 통하여 통보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74호
통보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기재 변경사항
통보시기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는 이렇게(6월호~8월호)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특급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 · 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 공사대장 통보 잊지마세요(6월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수급인)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서브시스템인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고 발주자는 그 통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전사적 시스템 관리분야

• 일반건설사, 현장관리시스템 구축①(9월호)

일반건설사들이 최근 시공 합리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건설현장의 전 과정을 데이터화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도입에 들어갔다.

건설사들이 선보인 현장관리시스템은 건설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데이터화 및 공유하는 건설관리 정보화 시스템이다.

최근들어 건설산업의 전산화 · 정보화는 건설업무 진행 단계인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 ·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시공단계에서 협력업체들 간의 다양한 정보 공유로 불필요한 노동력 및 재정 낭비를 줄여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9월호는 GS건설(주)의 전사적 관리 시스템인 TPMS을 소개했다.

□ 신기술 · 신공법

• 국내 최초 분리형 주방배기 시스템 도입(7월호)

삼성건설이 주방 내 소음과 배기문제를 획기적으로 보완한 "분리형 주방배기 시스템(모터팬 분리+천정 보조배기)을 국내 최초 개발했다.

삼성건설에서 개발한 '분리형 주방 배기 시스템'은 렌지후드 배기 팬을 베란다 또는 실외기실에 배치해 배기팬의 동작시 발생하는 소음이 실내에 크게 미치지 않도록 하고, 후드에서 이탈된 오염물질을 천정에 설치된 보조 배기 그릴을 통해 2차로 배기하는 새로운 방식의 배기 시스템이다.

• 아파트 난방 통합시스템 개발(8월호)

벽산건설(주)은 최근 '열병합발전과 개별난방 통합시스템'을 개발, 특허를 획득했다. 이 기술은 아파트에 소형 열병합발전기를 설치하는 중앙난방방식과 기존 개별난방방식이 합쳐진 통합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열병합발전시스템과 개별난방 시스템을 동시에 실시, 열병합발전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해 급탕수 온도를 높여 이를 직접 배출시키거나 개별보일러로 공급해 개별보일러의 연료 소모량을 절감토록 한 것이다.

• 세계 최초 태양열 이용 지역난방 시스템 개발 (11월호)

태양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개

발됐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동투자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공동연구팀이 연구 · 개발한 이 시스템은 태양열시스템과 지역난방시스템을 접목, 태양열을 이용해 90℃ 전후의 고온수를 축열조 없이 직접 지역난방에 공급하는 기술이다.

• 욕실 층상 이중배관 시스템 개발(11월호)

(주)청완산업이 새로 개발한 Double Up System은 욕실 배관을 층상으로 시공함으로써 시공의 용이성과 함께 소음걱정 해소, 쾌적한 환경 및 천장이 높아짐으로써 다양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 또 이 시스템으로 시공할 경우 화장실 소음 1등급과 구조부문 수리용이성 1등급을 얻을 수 있다.

□ 가스시공업계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2월호)

일반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난방방식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에 따른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역난방 열원의 사용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산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 굴착공사 착수 전 원콜(One Call)로 가스배관 확인해야(4월호)

정부가 도입하려 하는 원콜시스템(EOCS : Excavation One Call System)은 원콜센터에 전화 한통화를 하면 현장에서 만나는 도시가스 매설배관을 지면에 표시해 주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이 필요없고 곧바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 소형저장탱크용 고압호스의 성능인증 기준 해설(5월호)

소형저장탱크의 보급으로 벌크로리 공급시스템이 확대되고 체계적인 수요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LP가스 산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00㎏ 미만 소형저장탱크의 고압배관시공에 고압호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2006년 11월 소형저장탱크용 고압호스 성능인증기준이 제정되었다.

본지는 고압호스제조업체, 소형저장탱크 시공업체 등 관련업계에 참고자료가 되도록 새로 제정된 소형저장탱크용 고압호스의 성능인증 기준을 기술하였다.

• 신 · 구 규격 PE배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별표시(8월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하반기부터 신규격 PE배관은 4열 보조선(검정색) 표시 배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4열 보조선이 없는 신규격 PE 배관을 사용할 경우 로케팅와이어를 따라 길이 방향으로 100% 검정색 PE 테이프를 1열로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06년 12월 1일부터 KS규격(KSM 3514)이 ISO규격을 인용한 신KS규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 · 구 규격 PE배관 상호 접합시 안전성 확보방안이 요구됨에 따른 것이다.

• 가스보일러 사고현황 및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10월호)

가스보일러에 의한 CO 중독사고가 겨울철에 자주 발생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보일러 사고예방대책협의회' 가 발표한 가스보일러 사고현황 및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을 게재했다.